

한석주

보낸 사람: 최승훈

보낸 날짜: 2009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8:15

받는 사람: 박정수; 조장환; 지훈상; 손승국; 김충배; 노성훈; 김유선; 김남규; 김순일; 이우정; 박병우; 최진섭; 한석주; 김명수; 오정탁; 김경식; 정웅운; 형우진; 남기현; 백승혁; 강창무; 민병소; 최기홍; 이재길; 허규하; 이희대; 최승호; 윤동섭; 장항석; 정준; 이강영; 박준성; 박윤아

제목: 애정어린 충고와 문구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논문게재에 관한 징계에 대한 재심 요구.hwp

논문게재에 대한 재심요구입니다. 외과전공의 논문제출과 관계되어 외과학교실이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기간 숙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격한 감정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월내로 확장실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애정어린 충고와 문구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최승훈 올림

본문내용

논문게재에 관한 징계에 대한 재심 요구

존경하는 정남식 학장님

본인의 논문게재에 관한 2008년 7월 14일자의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사건개요

2003년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38(10):1499-1505 에 실린 Continuous versus intermittent administration of human endostatin in xenografted human neuroblastoma 와 2004년 대한외과학회지 67(6)441-446 에 실린 신경모세포종에서 human endostatin의 지속적 주입방법에 따른 효과 가 같은 논문의 중복게재라는 익명의 투서가 있는 후 연세의대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8년 7월 14일 3개월간 감봉처분의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한외과학회의 처분

익명의 투서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외과학회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투서를 하여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사건에 대한 징계요구를 일축하고 대신 차후 이중게재에 대한 것이 확인되면 저자의 소속장에게 통보할 것이며, 해당 논문은 취소하고 저자에게는 일정기간 게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대한외과학회지에 게재하여 회원에게 알렸습니다.

이중게재에 대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4. (이중게재) 중략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연구자가 서울대학교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와 무관하다.

5. (표절 및 이중게재의 판정)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이중게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징계에 대한 문제점

본인은 2003년과 2004년 해당 논문을 게재함에 있어서 다른 언어로, 독자가 전혀 다르며,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여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의 개념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대한외과학회지에 제1저자로 윤찬석을 넣은 것은 당시 전공의가 전공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때 1편이상의 제1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기위하여 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월 2일에 제정되어 당시에는 이차출판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징계는 2007년 1월 2일에 제정된 규정으로 2003년과 2004년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징계한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이 받아 들여진다면 현재 하고 있는 상식이나 관습에 따른 진료나 연구가 5년이나 10년 후 사회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규정을 만들고 독소조항을 넣어 현재의 모호한 것에 대한 진료, 연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일반론이

성립됩니다.

당사자인 대한외과학회에서 당시에 관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처벌을 거부하였고, 서울대학교 윤리규정에도 이중 게재의 판정은 해당 학계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이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인의 변호

익명의 제보자가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에 집요하게 징계를 요구하여 열렸던 윤리위원회와 대학본부의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본인은 성실히 출석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임경일교수로부터 2002년에 제가 일본 군마현 아동병원에 파견보내어 공동연구를 맡겼던 이정희 연구원과 남녀문제가 있어서 익명으로 제보하였다는 근거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소문한 결과 이정희 연구원의 소재가 파악되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어 같이 제출합니다. 3개월간의 징계기간동안 본인의 불이익만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 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위의 선배, 동료교수들도 본인의 억울한 처지를 공감하여 많은 자료와 충고를 주었습니다. 드레퓌스대위사건의 변호로 프랑스를 유대인학살에 빠지지 않게 하였던 에밀 졸라의 용감한 행동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당한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침묵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연세의대 판 미네르바사건으로 부르겠습니다. 익명의 가면을 쓰고 표면적으로는 부당한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인을 모략하고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우리 조직은 단합이 깨지고, 조직을 믿지 못하고 조직원들끼리 반목하는 윤리적 타락이 심해질 것입니다.

건의사항 및 향후 계획

본인은 2008년 7월 14일 본인에게 부과된 징계처분이 당시에는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사안에 비하여 가혹하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한 잘못을 시정하여 주시기 원하며, 본인이 납득 가능한 처분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만약 연세대학교의 도덕기준이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서 본인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2007년 1월 2일 이전과 이후에 관계없이 동일저자가 영어논문을 국어논문으로 제출한 것과 역으로 국어논문을 영어논문으로 고쳐서 이중게재한 수십편의 연세의대 논문중 양측 편집인의 동의가 없는 논문을 본인의 실명으로 밝히겠습니다. 모두 같은 기준으로 같은 징계를 받는 불행한 사태가 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